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. 12. 21 선고 2022가단3245 판결 [채무부존재확인 및
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5. 1. 8 선고 2024나1227 판결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. 12. 21 선고 2022가단3245 판결

전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3. 10. 26.

판 결 선 고 2023. 12. 21.

주문

-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.
- 원고(선정당사자)의 청구 및 선정자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, 선정자 D에게 각 70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선정자 D과 피고 사이의 2009. 6. 24.자, 2009. 11. 27.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선정자 D의 피고에 대한 7,000,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(선정당사자)의 주장 요지

(1)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

피고는 1993. 8. 31.경 E조합가 입금한 15,000,000원을 피고 군산지점의 E조합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하였다.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위 횡령액 15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3. 9.부터 2022. 12.까지 월 0.02%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합계 667,271,813원을 부당이득하였고, 원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금 중 일부로서 원고(선정당사자), 선정자에게 각 70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(2)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

피고는 2023. 3. 30.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선정자 D에 대한 7,000,000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음에도 선정자 D에 대하여 위 채무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.

나. 판단

(1)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(선정당사자)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, 피고가 위 15,000,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15,000,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(선정당사자)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(2)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

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.

확인의 소는 원고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·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. 이 사건에서 선정자 D은 선정자 D과 피고 사이의 2009. 6. 24.자, 2009. 11. 27.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선정자 D의 피고에 대한 7,000,000원의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, 위 채무는 결국 피고의 선정자 D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0가소56681 사건(전주지방법원 2011나2664 사건, 대법원 2011다75874 사건) 판결에 기한 채무,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F의 선정자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079374 판결(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5970 사건, 대법원 2022다238619 사건)에 기한 채무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다투는 것으로서 위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, 결국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, 원고(선정당사자)의 청구 및 선정자 D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은교

별지